

##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1. 22. (금요일), 15:00~19: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최성자, 김영운, 김해숙, 미등, 박상미,  
박영규, 서영대, 전경옥, 전용일, 채금석,  
허영일 (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목 차

## 【검토사항】

1	‘지승제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공 개)
2	‘제다’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공 개)
3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 검토	(비공개)
4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검토	(공 개)
5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검토	(비공개)
6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 보유자 인정 검토	(공 개)
7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검토	(공 개)
8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 전수교육조교 선정조사 여부 검토	(공 개)
9	2016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선정 계획 검토	(비공개)

## 【보고사항】

1	2016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계획 보고	(비공개)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관련 행정소송 결과 보고	(비공개)

##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6-01-001

### 1. '지승제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지승제조'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라 '지승제조'에 대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15.6~11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추진경위

- '지승제조'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관련자료 제출(충청남도/'13.9.16.)
-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3.12.31.)
- '지승제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15.6.19.~11.18.)

##### 2) 학술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 '지승제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
- 용역결과 주요내용
  - 지승공예품 제작기술은 19세기 이후에 등장하여 서민의 일상생활 및 취미활동 영역으로 활성화 된 공예기술로 보여짐.
  - 물론 지승공예품 제작기술이 우리나라만의 공예기술이고 발전가능성도 가지고 있지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공예종목에 비하여 전승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종목의 특성상 전승과정이 모호하며, 국가적 대표성·지역적 특성·예술적 형식미 등이 미흡하여 현시점상 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시도 무형문화재로 존치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지승기법의 활용

과 지승공예품 제작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라. 검토의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여부를 검토해 주 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시도 무형문화재로서 전승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 2. ‘제다’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제다’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라 ‘제다’에 대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15.5~10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추진경위

- ‘제다’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관련자료 제출(경기도/‘13.9.23.)
-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3.12.31.)
- ‘제다(製茶)’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15.5.22.~10.21.)

#### 2) 학술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 ‘제다(製茶)’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
- 용역결과 주요내용
  - 삼국시대 차에 관한 기록에서 조선후기 다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제다의 역사적 근거와 지속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과 차별되는 제다 과정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서 이러한 한국적 제다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은 매우 타당함.

### 라. 검토의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제다’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함.
-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종목명칭 및 범주 등을 논의하고, 이를 예고 내용에 반영함.
- 지정 예고 후, 소위원회를 개최함. 소위원회는 문화재위원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5명으로 함. 단,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소위원회 개최를 생략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 3.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 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 4.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5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 지정일 : 1988.12.1.
- 전승자 현황
  - 전수교육조교(3명) : 이현자(여, ‘93.8.2. 선정)
  - 이명자(여, ‘94.4.1. 선정)
  - 양성옥(여, ‘96.5.1. 선정)

###### 2) 추진경과

- 2013년도 전승자 충원계획 수립(‘13.1월)
- 보유자 인정 신청 접수 공고(‘13.2.19.) 및 접수기간 연장 공고(‘13.3.22.)
- 무용종목 유파 검토 학술연구용역 실시(‘13.9~11월)
- 무용 개인종목 조사지표 마련 학술연구용역 실시(‘14.6~12월)
- 2015년도 전승자 충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15.1월)
- 조사위원 인력풀 추천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15.3월, 11월)
-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 검토(‘15.3.27.)
- 보유자 인정조사 방식 자문회의(‘15.9.21)
- 조사단 사전회의 실시(‘15.11.19.)

- 현지조사 실시('15.12.7.)

### 3) 조사개요

- 조사일시 : '15.12.7.(월) 09:30~12:30
- 조사장소 : 한국문화의집 공연장(KOUS, 서울)
- 조사자 : 관계전문가 10명
- 조사대상자(4명) : 양성옥, 이○○, 이○○, 박○○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에 의거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실시

### 라. 검토의견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태평무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양성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인정 예고 후, 소위원회를 개최함. 소위원회는 문화재위원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5명으로 함. 단,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소위원회 개최를 생략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안건번호 무형2016-01-005

## 5.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 6.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 보유자 인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5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장조사(‘16.1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  
로 보유자 인정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
- 지 정 일 : 1996.5.1.
-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이상순(‘50년생, 여/무녀, ‘07.7.9.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이성재(남/무격, ‘07.3.12. 선정)  
이선호(남/악사, ‘14.12.16. 선정)

#### 2) 추진경과

- 2015년도 전승자 총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15.1월)
- 해당 보존회에서 보유자 인정 관련 자료보고서 제출(‘15.1월)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5.12.15.) 및 현지조사 실시(‘16.1.5.)

#### 3) 조사개요

- 조사일시 : ‘16.1.5.(화) 13:00~18:00
- 조사장소 :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풍류극장(서울 강남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명
- 조사대상자(1명) : 이○○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에

## 의거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실시

### 라. 검토의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보유자로서 전승기량이 부족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 바. 특기사항 : 없음.

## 7.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검토

###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5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실태조사(‘15.10월)를 실시하였음.
-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15.12.18.) 결과,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 지 정 일 : 1967.6.16.
- 전승자 현황
  - 보유자(2명) : 김기수(‘36년생, 남/노장, 목중, 가면제작, ‘87.1.5. 인정)  
김애선(‘37년생, 여/소무, 상좌, 목중, ‘89.12.1. 인정)
  - 전수교육조교(6명) : 장용일(남/목중, 취발이, ‘80.10.1. 선정)  
김중엽(남/목중, 미얄영감, ‘87.7.1. 선정)  
최창주(남/목중, 마부, ‘02.2.5. 선정)  
박상운(남/목중, 신장수, ‘02.2.5. 선정)  
김호석(남/피리, ‘02.2.5. 선정)  
박용호(남/대금, ‘02.2.5. 선정)

#### 2) 추진경과

- 2015년도 전승자 인·선정 여부 실태조사 계획에 포함(‘15.1월)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5.10.19.)

- 현지 실태조사 실시('15.10.23.)
-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15.12.18.) 검토

### 3)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봉산탈춤' 보유자 인정조사 필요 여부 검토
- 조사일시 : '15.10.23. 16:30~20:00
- 조사장소 :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서울 강남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 : '봉산탈춤' 보유단체 및 단체소속 전승자
- 조사내용 : 종목 전승기량 점검, 전승환경 및 보유단체 운영상황

## 라. 검토의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보유자인정조사를 실시함.
  - 전수교육조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2016년도 조사계획에 반영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 8.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 전수교육조교 선정조사 여부 검토

###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 전수교육조교 선정조사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5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전수교육조교 선정조사 여부 실태조사(‘15.11월)를 실시하였음.
-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15.12.18.) 결과,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선정조사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
- 지정일 : 1967.3.31.
- 전승자 현황
  - 전수교육조교(4명) : 동선본(남/악사(통소), ‘96.5.1. 선정)  
동선백(남/사자앞채, 북, ‘01.11.30. 선정)  
동영범(남/사자앞채, 사자뒷채, ‘01.11.30. 선정)  
강선윤(여/뽕추춤, ‘01.11.30. 선정)

#### 2) 추진경과

- 2015년도 전승자 인·선정 여부 실태조사 계획에 포함(‘15.1월)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5.10.19.)
- 현지 실태조사 실시(‘15.11.19.)
-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15.12.18.) 검토

3)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북청사자놀이' 전수교육조교 선정조사 필요 여부 검토
- 조사일시 : '15.11.19. 16:00~20:00
- 조사장소 :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서울 강남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 : '북청사자놀이' 보유단체 및 단체소속 전승자
- 조사내용 : 종목 전승기량 점검, 전승환경 및 보유단체 운영상황

라. 검토의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수교육조교 선정조사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보존회 내부 전승자 갈등상황을 감안, 2016년 조사계획에 반영하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 9. 2016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선정 계획 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6-01-010

### 1. 2016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계획 보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관련 행정소송 결과 보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